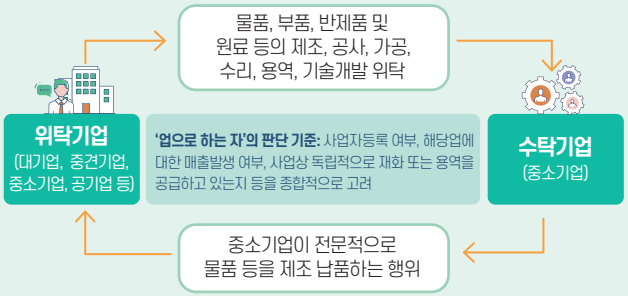
수·위탁거래의 정의

제조·공사·수리·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(위탁기업)가 물품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(이하 '제조')을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전문적으로 위탁하여 납품받는 것을 말합니다.(상생협력법제2조제4호)

* (예시)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공장건설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됨



상생협력법·하도급법 거래영역 비교

▣거래 당사자 기업규모별 비교

상생협력법(수·위탁 거래)	하도급법(하도급거래)
대기업·중소기업간 및 중기업간 모든 수탁·위탁거래 * 중견기업도 일정요건 하에 수탁기업에 포함가능 **매출액, 종업원 수 제한없이 적용 가능**	• 대·중소기업 → 중소기업 • 대기업 →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• 2조원 초과 중견기업 → 8백억~3천억원 미만중견기업(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인정) • 중소기업 → 중소기업 * (매출액) 원사업자 > 수급사업자 ** 단,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·수리위탁(30억원 미만), 건설위탁(45억원 미만), 용역위탁(10억원 미만)

▣거래 당사자 업종별 비교

상생협력법은 위탁대상과 위탁기업의 관계가 30가지(하도급 7가지 포함) 가능, 하도급법은 7가지로 제한적

상생협력법(6X5=30개의 거래형태)	하도급법(4+3=7개의 거래형태)
(위탁기업)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(6) ↓ (수탁기업)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(5)	(제조 ①, 판매 ②, 수리 ③, 건설 ④) ▶ 제조 수리 ▶ 수리 ⑤ 건설 ▶ 건설 ⑥ 용역 ▶ 용역 ⑦

※ 예) 용역업자 → 제조위탁 : 수위탁 O, 하도급 X
제조업자 → 공장건설위탁 : 수위탁 O, 하도급 X

하도급은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, 수위탁거래는 제한이 없음

신청자격, 신청방법 및 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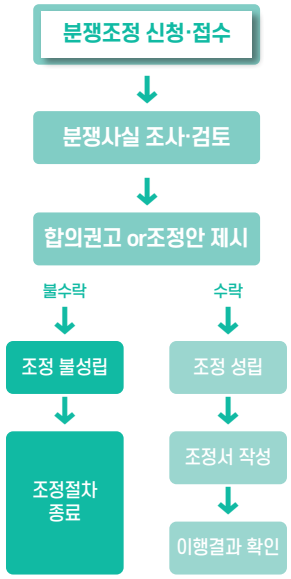
신청자격 수·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수탁기업 또는 위탁기업

신청방법 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

» 중소기업 수·위탁거래종합포털 홈페이지 (https://www.smes.go.kr/poll/main/main.do)
- [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]
- [자율적 조정신청/분쟁조정 요청]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

문 의 처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
(대표번호 **1357**+내선 **9**번, med@win-win.or.kr)

〈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〉



※ 조정불성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되며, 중소벤처기업부의 법 위반여부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수·위탁 분쟁조정제도



중소벤처기업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수·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란?

수·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**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***에서 **무료**로 **신속·공정**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[상생협력법 제28조의5]

* 「상생협력법」제28조의5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·운영

분쟁조정 신청 대상

- 약정서,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
- 납품대금의 지급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위탁·수탁기업 준수사항(부당 납품대금 깎는 행위 금지, 부당 발주 중단행위 금지 등)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
- 납품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
-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

분쟁조정에 따른 효력

집 행 력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 (상생협력법 제28조의10제8항)

»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 가능

시효중단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(상생협력법 제28조의9제4항)

»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

행정조치 면 제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(시정명령, 개선요구 등) 면제(상생협력법 제28조의9제7항)

수·위탁 분쟁조정제도

1.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고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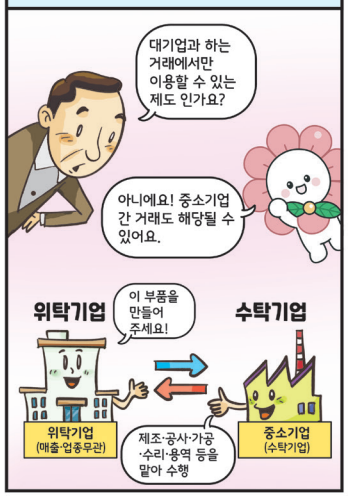
2. 수•위탁 분쟁조정제도



3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•공정하게



4. 우리 회사의 거래도 해당될까?



5. 대금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



6. 그밖의 분쟁이 생겼을 때



7. 수탁기업, 위탁기업 모두에게 상생의 길



8.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

